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1.

강준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 8.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0차 정무위원회 (2025. 11.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 11. 24.)

상정, 의결(수정가결)

– 제11차 정무위원회 (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준현의원)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기후변화 대응·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대·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선명한 목표 설정을 위해 거시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부문부터 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미시적인 규제 개혁 부문까지 위원회 조직을 포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고자 함(안 제6조, 제23조 및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 명 호)

- 개정안은 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②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③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을 개편하는 한편, ④ 종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에 종료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5조,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u>규제개혁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 ----- ----- -- <u>규제합리화위원회</u> ----- -----.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u>규제개혁위원회</u> 를 둔다.	제23조(설치) ----- ----- ----- ----- <u>규제합리화위원회</u> -----.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 <u>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u> -----.
② 위원장은 <u>국무총리</u> 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u>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u> -----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u>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u> 이 된	④ ----- <u>간사는 국무조정실장</u> ----- -----.

현행	개정안
다. ⑤ (생략)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위원회 분류에는 행정기관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되는 ‘자문위원회’²⁾가 있는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예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5명 이내, 위원장: 대통령), 국가인적자원위원회(30명 이내, 위원장: 대통령), 국가

행정안전부의 「2025 행정기관위원회 현황」³⁾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유일한 행정위원회⁴⁾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정책 집행에 있어 전문성, 독립성 및 중립성이 강조되는 경우에 설치됨.

□ 이와 같이, 행정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 심사·정비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데,⁵⁾ 당연직(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총 구성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합해 총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 되며,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됨.⁶⁾

우주위원회(30명 이내, 위원장: 대통령), 국가바이오위원회(40명 이내, 위원장: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45명 이내, 위원장: 대통령),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60명 이내, 위원장: 민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50명 이상 100명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39명 이내, 위원장: 민간) 등

3) 「2025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 2025.8.

4) <행정위원회 예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2025 행정기관위원회 현황(행정안전부)」자료의 분류에 따름)

5)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6) 「**행정규제기본법**」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규정하여 규제정책의 방향성을 ‘개혁’에서 ‘합리화’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임.

<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 비교 >

구 분	규제개혁위원회(현행법)	규제합리화위원회(개정안)
소속 (§23)	대통령	
기능 (§24)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②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③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④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구성 (§25③)	당연직(정부)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단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임기 (§25⑤)	당연직(정부)위원 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한차례 연임 가능)	
위원 수 (§25①)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 부위원장 포함 35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장 (§25②)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2명)	대통령 (1명)
부위원장	-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 이내
간사 (§25④)	민간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국무조정실장
위원장 직무대행 (§25⑥)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부위원장

□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규제‘개혁’위원회→규제‘합리화’위원회)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또는 억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꼭 필요한 규제라면 오히려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법 제5조⁷⁾는 ‘국민의 자유 및 창의 존중’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규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 간 균형 잡힌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위원회 명칭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였는데,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정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 대통령)하였는데,

7) 「행정규제기본법」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⁸⁾에서 위원장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상위직급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현황(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을 보면,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횟수는 한차례도 없어,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위원회 조직 개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의 당초 취지를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국무총리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횟수>

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횟수	국무총리 위원장 주재 횟수
2022	40회	0회
2023	25회	0회
2024	20회	0회
2025(9월기준)	16회	0회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미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두 차례 개최⁹⁾ 하는 등, 규제합리화 관련 최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2025년 9월 15일 및 10월 16일

고위급 회의체를 직접 주재하며 강한 정책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는 회의의 경우에도 부위원장(국무총리 포함 5명 이내)이 위원회를 대표·주재하여,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둘째, 개정안은 위원을 대폭 증원(20명이상 25명이하 → 35명이상 50명이하)하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민간위원 수가 확대되어 민간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분과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기관 소관사무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¹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위원 수를 확대할수록 규제 관련 정책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

규제개혁위원회의 현행법상 위원 정원은 ‘20명 이상 25명 이하’임에도, 실제로는 2025년 11월 기준, 총 18명(정부위원 8명¹¹⁾, 민간위원 10명)

10) 「행정규제기본법」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11) ①국무총리(법 제25조제2항), ②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시행령 제18조제2항)

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둘 수 있고, 위원회 심사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¹²⁾ 위원회 소속으로 자문기구도 설치할 수 있어¹³⁾, 원활한 민간 소통을 위한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위원 증원의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다루게 될 규제 의제가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해지고, AI·데이터·바이오·로봇·환경·지역균형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며, 현재 18명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을 앞둔 과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위촉을 자제해 온 결과라고 설명함.

□ 셋째,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은 현재 재임 중인 위원¹⁴⁾의 임기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에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12) 「행정규제기본법」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4) 국무조정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규제개혁위원회의 총 위원은 18명이며, 이 중 민간위원은 총 10명인데, 이들의 임기 종료예정일은 2026년도 8월(3명), 2026년 9월(1명), 2026년 12월(6명) 등임.

부칙의 취지가 종전 민간위원을 해촉하려는 것이라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2년) 중에 해촉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어,¹⁵⁾ 위원회 명칭만 변경될 뿐 현행법상 위원회 기능¹⁶⁾에 변화가 없음에도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를 종료할 경우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새로 출범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단순한 위원회 명칭 변경을 넘어,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¹⁷⁾과 위상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개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기능·역할에 부합하는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한다’는 제도 개편의

15) 「행정규제기본법」제25조(구성 등)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6) 「행정규제기본법」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17) 국무조정실은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주로 개혁·완화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의 정비에 방점을 두었지만, 새로 출범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완화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정교화하는 양면적·균형적 접근을 제도적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성격이 강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기존 민간위원도 후보군에 포함해 위촉 필요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당초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중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27.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당초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중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일반적 경과조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u>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u>)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조(<u>일반적 경과조치</u>) (개정안 제1항과 같음)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u>제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u>	<삭 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을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법률 제20582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u>규제개혁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 ----- ----- ----- <u>규제합리화위원회</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u>규제개혁위원회</u>	제4장 <u>규제합리화위원회</u>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u>규제개혁위원회</u> 를 둔다.	제23조(설치) ----- ----- ----- ----- <u>규제합리화위원회</u> ----- --.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 --- <u>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u> -- -----.
② 위원장은 <u>국무총리</u> 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u>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	④ ----- <u>간사는 국무조정실장</u> -----

<u>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 는 사람이 된다.</u>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 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